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1 선고 2016가단5024027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나8224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1 선고 2016가단5024027 판결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5. E

변론 종결 2016. 10. 31.

판결 선고 2016. 11. 2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4,948,519원 및 그 중 64,416,999원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2016. 3. 9.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 D, E과 피고 B 사이에 2015. 11.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 D, E은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5. 11. 26. 접수

제10208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당시에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었다)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2014. 11. 19. 피고 A과 사이에 보증금액 64,000,000원, 보증기한 같은 날부터 2015. 11. 18.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B는 피고 A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의 보증채무가 보증기한 내에 보증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기한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 적용보증요율에 연 0.5%를 가산한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 ③ 원고가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4. 11. 21. 하나은행으로부터 8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1. 18.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나, 변제기인 2015. 11. 18.이 도과하도록 하나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하나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6. 1. 14. 하나은행에게 64,416,999원(원금 64,000,000원 + 이자 416,99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가 위 구상금 채권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위하여 지출한 대지급금은 335,140원이고, 피고 A이 위 보증기한 내 보증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약금 196,380원[64,000,000원 × 2.0%(적용보증요율 1.5% + 0.5%) × 56/365, 10원 미만 버림]이 발생하였다.

마. 한편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2015. 11. 26.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 D, E(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5. 11. 26. 접수 제102085호로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40,869,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피고 A, B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피고 C 등에 대하여는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64,948,519원(= 대위변제금 64,416,999원 + 대지급금 335,140원 + 위약금 196,38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64,416,99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1. 14.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와 피고 C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당시인 2015. 11. 26.에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인 피고 A이 2015. 11. 18. 대출금 채무를 연체함으로써 피고 B가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2016. 1. 14. 대위변제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무자력 및 사해의사 살피건대, 갑 7호증의 2, 갑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정보제공명령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B는 유일한 재산으로 시가 322,000,000원(= 644,000,000원 × 1/2)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 C 등에게 240,896,000원, 하나은행에 대하여 80,416,000원(= 16,000,000원 + 64,416,000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하여 17,244,964원의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채무 합계액이 338,556,964원(= 240,896,000원 + 80,416,000원 + 17,244,964원)에 이르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이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피고 B가 피고 C 등과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 C 등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나. 피고 C 등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피고 C 등은 피고 B 및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분양하였으나 그 분양대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여 그 잔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를 해할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다룬다.

살피건대, 피고 C 등의 주장과 같이 피고 C 등이 피고 B에 대한 분양잔대금 채권을 가진 진정한 채권자로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여전히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되는 것인데, 피고 C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해의사의 추정을 뒤집고 위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 C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C 등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 등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진현지

별지